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4-54 번 호

제출연월일 : 2003. 1.

제 출 자 : 동두천시장

1. 제안이유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전문개정으로 인하여 폐 지 및 신설된 민원사무의 수수료를 정비하고
- 수수료 감면 내용 중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 정비 와 독립유공자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추가로 신설 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대상 민원사무를 정비

- 현행 제증명등수수료 징수대상 사무 138종목 중
 - 폐지하는 수수료 --- 6종목
 - 신설하는 수수료 --- 2종목
 - 명칭변경하는 수수료 --- 5종목으로 134종목으로 개정

구 분	종목수	신설 및 폐지	비 고
공시지가 확인	1종목	명칭변경	행정자치부 지침
	6종목	폐ス	상위법 폐지
보건사회 및 문화공보관계	2종목	신설	상위법 제정
	4종목	명칭변경	"

- 나.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은 도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 조례 조항 삭제 (안 제4조제3항)
- 다. 독립유공자등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 (안 제7조제1항제5호)

동두천시조례 제 호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대상자 "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한 1종수급권자 "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참전군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관내에 신청·등록

하는 제증명등으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 표 1 〉

개 정 된 제 증 명 수 수 료 요 율 표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증 명) 1. 인감에 관한 증명 (1)인감증명 (2)인감의 개인신고	1통 1건	700원 600원	일제신고등은 제외함
2. 신상에 관한 증명 (1)부양가족사실확인원 (2)국제결혼증명	1건 1건	1,000원 3,000원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각종신고 및 등록필 (2) 〈 삭 제 〉	1통	1,000원	
(3)공장등록 증명 (4)시설 보유 증명 (5)(식품환경) 영업허가, 휴·폐업 사실증명 (6)의료기관, 약국 (휴·폐업) 사실증명	1통 1통 1통 1통	1,100원 2,600원 2,200원 2,000원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 삭 제 〉			
(2)공부의 등·초본 교부 대장문서			지적관계 제외
• 토지도면	1통	500원	
• 건물도면	1통	500원	
(3)공부열람		40001	
· 기본료 · 초과료	시간당 10분당	400원 100원	
(4)인·허가·등록·지정등의 대장열람	10분명 1건	100년 400원	
(5)공시지가확인서	1개년도 1필지당	8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5.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1)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 도면의 등본교부	1필지	1,000원	
(2)환지 예정지 분할	1필지	1,200원	
(3)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	1필지	1,200원	
(4)표준주택 설계도면	1필지	2,500원	
(5)체비지 분할 신청	1필지	1,200원	
(6)토지대금 완납 증명	1건	1,200원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1)지방세 납세증명	1통	700원	
(2) 〈 삭 제 〉			
(3)세목별 과세증명	1통	700원	
(4) 〈 삭 제 〉			
 7. 회계에 관한 증명			
(1)실적(납품,용역,거래,공사)증명] 기통	 1,400원	
(2) 〈 삭 제 〉			
(3)원천징수 공제 증명	1통	 1,400원	
(4) 〈 삭 제 〉	_	,	
 8. 주택에 관한 증명			
(1)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 증명	1통	600원	
9. 개인정보화일열람			
(1)화일열람	 1건	200원	
(2)정정청구	'	200원	
10. 기타 제증명	4 7 1	4.000.01	
(1)기타 시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건	1,200원	

	1	T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471	계속2,000원	
(1)공유재산의 대부신청	1건	신규7,000원	
(2)농지등급 설정 심사 청구 신청 (3)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등 재교부 신청	1건 1건	5,000원 1,500원	
(4)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원	
(5)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법인) (6)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공인중개사)	1건 1건	20,000원 7,000원	
(7)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8)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1건 1건	9,000원 3,000원	
재교부신청	l'C	3,000 2	
2. 회계관계			
(1)입찰참가신청 및 수의계약 신청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건	5,000원	
• 5천만원 초과 10억원 이하	1건 1건	5,000년 7,000원	
• 10억원 초과	1건	10,000원	
3. 농. 수산부 관계			
(1)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2)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1건	400원 6,500원	
4.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0,000 E	
4. 경공 및 등의자전 전계 (1)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	1건	3,000원	
 5. 도시, 건설 관계		·	
(1)사도 개설허가 및 축조 변경 허가 신청	1건	7,000원	
(2)공영주택의 양수, 양도등 승인신청 (3)공(시)영 주택 증·개축 승인신청	1건 1건	3,500원 3,000원	
(4)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필지	5,500원 5,500원	
(5)체비지 명의변경신청	1필지	2,600원	
(6)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7)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 신청	1필지 1필지	2,700원 2,200원	
6. 보건사회관계	151	2,200	
(1)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개설신고	1건	30,000원	
(2)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개설신고시형변경신청 (3)안경업소 개설등록	1건	20,000원	
(0) COB = 7 CO = 1	1건	2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4)치과 기공소 인정 신청	1건	20,000원	
(5)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30,000원	
(6)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20,000원	
(7)안마시술소 개설신고	1건	30,000원	
(8)안마시술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20,000원	
(9)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1건	20,000원	
(10)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1건	20,000원	
(11)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재교부	1건	2,000원	
(12)종합병원 개설허가(부속의료기관 포함)	1건	90,000원	
(13)병원급 개설허가(부속의료기관 포함)	1건	60,000원	
(14)의료기관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30,000원	
(15) 〈 삭 제 〉		,	
(16) 〈 삭 제 〉			
(17)유원시설업 허가 및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1건	50,000원	
(18)유원시설업(기타유원시설업)변경허가 및 신고	1건 1건	25,000원	
(19) 〈 삭 제 〉		20,000	
(20) 〈 삭 제 〉			
(21)이.미용사 신규면허	1건	2,300원	
(22)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1건	2,200원	
※ 영업자 지위승계 수수료는 신규 영업허가 또는	, ,	2,200 C	
영업신고 수수료에 준한다.			
7. 문화공보 관계			
(1)공연장업 등록	1건	12,000원	
(2)공연장업 변경등록	1건	7,000원	
(3) 〈 삭 제 〉			
(4) 〈 삭 제 〉			
(5) 〈 삭 제 〉			
(6) 〈 삭 제 〉			
(7)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 등록 및 신고	1건	33,000원	
(8)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1건	15,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행정정보 공개)			
1. 문서대장등			
(1)원본의 열람.시청			
• 열람	- 1건(10매기준)1	200원	
2 U	회	2001	
	10매초과시5매마	100원	
	다	1002	
(2)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 사본(1매기준)	- A3이상	3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 B40 ō}	250원	
	1매초과마다	50원	
(3)전산자료의 열람, 시청			
• 열람	- 1건(10매기준)1	200원	
	회	200 <i>2</i>	
	10매초과시5매마	100원	
	다	1000	
(4)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 사본(종이출력물)	- 1매마다(A3이상)	300원	
	- 1매마다(B4이호)	250원	
· 복제	- 1건(10매기준)1	250원	
一 / 川	회	2002	
	10매초과시5매마	100원	
	다	1000	
※ 매체비용은 별도			
2. 도면. 카드등			
(1)원본의 열람.시청			
· 열람	- 10H	2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2)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 사본(1매기준)	- A3이상	3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 B40 ō∤	250원	

1매초과마다 - 1매 - 1매초과마다 - 1매초과마다 - 1매마다(A3이상)	50원 200원 100원	
- 1매마다(A3이상)	100원	
- 1매마다(B4이하) - 1건(10매기준)1회 10매초과시5매마다	300원 250원 250원 100원	
- 1개(60분기준)마다 - 1건(30분기준)마다 - 1개마다 - 1건마다	1,500원 700원 5,000원 3,000원	
- 1롤(60분기준)마다 - 1편(30분기준)마다 - 1롤마다 - 1편마다 - 1편	1,500원 700원 5,000원 3,000원 1,500원	
- 1 - 1 - 1	편(30분기준)마다 롤마다 편마다	편(30분기준)마다 700원 롤마다 5,000원 편마다 3,000원 편 1,500원

	기 즈	O 0H	ш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4)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 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 10분마다	3,000원	
5. 영화필름 (1)원본의 열람.시청 · 시청(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시청(여러편이 1캔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기준)마 다 - 1편(30분기준)마 다	3,500원 2,000원	
6. 슬라이드 (1)원본의 열람.시청 · 시청	- 1컷마다	200원	
(2)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 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 1컷마다	3,000원	
(3)전산자료의 열람.시청 · 시청	- 1컷마다	200원	
7. 마이크로 필름 (1) 원본의 열람.시청	- 1건(1 0 컷기준)1		
· 열람	회 10컷초과시1컷마 다	500원 100원	
(2)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 사본(출력물1매기준)	- A3이상 1매초과마다 - B4이하 1매초과마다	300원 200원 250원 150원	
· 복제 ※ 매체비용은 별도	- 1롤마다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 사진.사진필름			
(1)원본의 열람.시청			
• 열람	- 10	200원	
	1매초과마다	50원	
(2)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 인화(필름)	- 1컷 1 매 초 과 마 다	500원	
	3"×5"	200원	
	5"×7"	300원	
	8 " ×10 "	400원	
·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3)전산자료의 열람.시청			
• 열람	- 10#	200원	
	1매초과마다	50원	
(4)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 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1매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 " ×10 "	150원	
• 복제	- 10분마다	5,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준) ① ~ ② (생략)	제4조(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 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할 때는 1건마다 수수료 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u>〈 삭 제 〉</u>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생략) 1. <u>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u> <u>택</u> 보호 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현행과 같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한 1종수급권자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u>〈 신 설 〉</u>	5.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참전군
	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관내에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으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 6	행			개 정	안	
〈 ^{별표 1〉} 제증명등수수료	요율	丑		〈 별표 1〉 제증명등수수회	로요율	II
구 분	기 준	요 액 t	비고	구 분	기 준	요액 비그
(중 명) 1 ~ 3 (생략)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 (4) (생략)	1 개 년			(중 명) 1 ~ 3 (현행과 같음)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및 열람 (1) ~ (4) (현행과 같음)	1 개 년	
(5) 공시지가확인서(토지.임야대 장 등본에 기재하여 발급할 경우도 같음)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등)	도 1 필 지 당	800원		(5) 공시지가확인서	도 1 필 지 당	800원
(인가.여가.신고.궁목.시정.확인당)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등)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보건사회 관계 (1) ~ (14) (생략)				6. 보건사회 관계		
	1 7]	<u>25,000</u>		(1) ~ (14) (현행과 같음)		
(15) 컴퓨터 게임장업 영업허가	<u>1건</u>	<u>원</u>				
(16) 컴퓨터 게임장업 변경허가 및 신고	<u>1건</u>	<u>13,000</u> <u>원</u>		〈 삭 제 〉		
(17) 종합유원 시설업 영업허가	1건	50,000 원		(17) 유원시설업 허가 및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1건	50,000 원
(18) 종합유원 시설업 변경허가 <u>및 신고</u>	1건	25,000 원		(18 유원시설업(기타유원시설업) 변경허가 및 신고	1건	25,000 원
(19) 기타유기장업 영업허가	<u>1건</u>	<u>25,000</u> 원		<u>〈 삭 제 〉</u>		
(20) 기타유기장업 변경허가 및 <u>신고</u>	1건	<u>13,000</u> <u>원</u>		<u>〈 삭 제 〉</u>		
7. 문화공보 관계				 7. 문화공보 관계		
(1) 공연장 설치허가	1건	12,000 원		(1) <u>공연장업 등록</u>	1건	12,000 원
(2) <u>공연장 증축등 허가사항</u> 변경신청	1건	7,000원			 1건	7.000원
<u>변경신정</u> (3) ~ (4) (생략)		.,		(3) ~ (4) (현행과 같음)		.,
(5)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자 등록신청	<u>1건</u>	<u>6,000원</u>		<u>〈 삭 제 〉</u>		
(6)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자 변경등록 신청	1건	6,000원		<u>〈 삭 제 〉</u>		
<u>〈 신 설 〉</u>				(7)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 통 <u>관련업 등록 및 신고</u>	1건	<u>33,000</u> <u>원</u>
<u>〈 신 설 〉</u>				(8)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 통 관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1건	<u>15,000</u> <u>윌</u>

폐지. 신설. 명칭변경하는 수수료 종목

○ 폐지 해야할 수수료 --- 6종목

수수료명	현요율	폐지근거	비고
컴퓨터게임장업 영업허가	25,000원	공중위생법	관계법 폐지
컴퓨터게임장업 변경허가 및 신고	13,000원	u	··
기타 유기장업 영업허가	25,000원	и	u
기타 유기장업 변경허가 및 신고	13,000원	· ·	u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6,000원	음반및비디오	"
등록신청	0,000 &	물에 관한법률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6,000 9]	"	"
변경등록신청	6,000원		

○ 신설 해야할 수수료 -- 2종목

수수료명	원가분석액	조 정 요 율	신설근거	비고
음반.비디오물 및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	42,000원	33,000원	게임물에관한법	관계법 제정
업 등록 및 신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	10 650 0]	15,000원	u	u
업 등록사항 변	18,650원			
경신고				

※ 유통관련업 --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복합유통.제공업

○ 명칭 변경해야할 수수료 --- 5종목

수 수 료 명	요 율	명칭변경	근거	비고
공시지가확인서(토지.임야 대장등본에 기재하여 발급할 경우에도 같음)	800원	공시지가 확인서	지적법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제 9조	공시지가는 지적법에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임.
공연장 설치허가	12,000 원	공연장업 등록	공연법	관계법 개정 공연장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
공연장 증축등 허가사항 변경신청	7,000원	공연장업 변경등록	공연법	u
종합유원시설업 영업허가	50,000 원	유원시설 업 허가 및 기타유원 시설업 신 고	관광진흥법	관계법 개정 관광진흥법시행령이 정하는 - 종합.일반 유원시설 업: 허가 - 기타 유원시설업 : 등록
종합유원시설업 변경 허가 및 신고	25,000 원	유원시설 업, 기타유원 시 설 업 변경 허가 및 신고	u	"

< 원 가 산 출 조 사 표 >

□. 제증명등수수료의 개황

- 1. 수수료의 명칭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 등록 및 신고
 -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 일반게임장업
 - 노래연습장업
 - 복합유통·제공업
- 2. 담당부서 : 문화공보과
- 3. 근거법률:「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46조제②항
- 4. 업무소요시간 : 240분

□. 수수료의 원가분석(1건당)

1. 인 건 비 : 36,703.20 [(240분 × 152.93원 (9급 9호봉)]

2. 여 비 : 5,000.00 (관내 4시간 미만)

3. 인쇄조판비 : 44.13 (신청서)

4. 소 모 품 비 : 42.00 (A4용지 5장이상)

5. 기 타 경 비 : 213.72

- 통 신 비 : 114.00 (전화 2통화)

- 감가상각비 : 99.72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감가상각)

6. 소계(원가) : 42.003.05

7. 원가구성요소 : c d g h l 0 0 q t

(단위당 비용 및 산출근거 참조)

□. 제안금액 (원가의 80%)

원가 (42,000원) * 0.80 = 33,000원

< 원 가 산 출 조 사 표 >

40 (세124회-세6자)
□. 제증명등수수료의 개황
1. 수수료의 명칭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 일반게임장업
○ 노래연습장업
○ 복합유통·제공업
2. 담당부서 : 문화공보과
3. 근거법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46조제②항
4. 업무소요시간 : 120분
□. 수수료의 원가분석(1건당)
1. 인 건 비 : 18,351.60 [120분 × 152.93원 (9급 9호봉)]
2. 여 비 : 0.00
3. 인쇄조판비 : 44.13 (신청서)
4. 소 모 품 비 : 42.00 (A4용지 5장이상)
5. 기 타 경 비 : 213.72
- 통 신 비 : 114.00 (전화 2통화)
- 감가상각비 : 99.72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감가상각)
6. 소계(원가) : 18,651.45

7. 원가구성요소 : ⓒ ⑧ h ① ⑩ ⑨ t (단위당 비용 및 산출근거 참조)

□. 제안금액 (원가의 80%) 원가(18,650원) * 0.80 = 15,000

□ 시.군별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 수수료율 현황

(2002. 10월현재)

(단위 ; 원)

신청민원 시군별	등록	변경신고	조례개정여부	비고
동 두 천 시	33,000	15,000	개 정(안)	
의정부시	50,000	50,000	개 정	
연 천 군	20,000	5,000	개 정	
파 주 시	25,000	9,000	개 정	
고 양 시	25,000	13,000	개 정	
안 산 시	20,000	5,000	개 정	
이 천 시	40,000	15,000	개 정	
평 택 시	20,000	5,000	개 정	
오 산 시	40,000	10,000	개 정	
수 원 시	45,000	15,000	미 개 정	컴퓨터게임장업
과 천 시	20,000	5,000	미 개 정	"
양 주 군	7,000	6,000	미 개 정	44
포 천 군	17,000	17,000	미 개 정	"
성 남 시	20,000	5,000	개정중인 요율	
부 천 시	30,000	20,000	개정중인 요율	
안 양 시	25,000	25,000	개정중인 요율	
용 인 시	25,000	13,000	개정중인 요율	

□ 유통관련업 민원사무 처리현황

(단위 : 건)

구 분	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	비고
계	170	101	25	
1999년	59	42	0	
2000년	62	29	0	
2001년	40	30	9	
2002. 9월	9	0	16	